



라이나손해보험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

Chubb 개인실손의료보험(단체전환용)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특종-상해/상해

2. 보험종목의 명칭 : Chubb 개인실손의료보험(단체전환용)

3. 보험의 목적

- 1) 피보험자의 신체
- 2)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 1)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 보험료 납입주기 :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별 보험료납입주기는 아래와 같다.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1년	일시납, 2회납, 4회납, 12회납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 1)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 2) 실손의료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1) 적용대상(단체계약 제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보험료 할인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수급권자 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로부터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영수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한다.

3)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회사는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

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 주거나,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해 준다.

4) 실손의료비 무사고 할인

(1) 적용대상

이 상품의 가입일 이후 당해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유효한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의 “무사고 판정기간”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은 제외)이 없는 계약

(2) 보험료 할인

회사는 (1)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의 차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1년) 동안 기본형 및 특약형 각각에 대해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함

7. 기타

1) 판매제한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은 실손의료보험 개인실손전환(단체→개인) 특별약관에 따라 단체계약에서 개인 계약으로 전환하는 계약에 한해 판매한다.
- ②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의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최고 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보장종목별로 분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해급여형과 상해비급여형, 질병급여형과 질병비급여형은 함께 판매한다.

구 분	보험종목		보험가입금액 한도
기본형	상해급여		5천만원 이내
	질병급여		5천만원 이내
특약형	상해비급여		5천만원 이내
	질병비급여		5천만원 이내
	3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 이내
		주사료	250만원 이내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이내

- ③ 보험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판매하지 아니한다.
- ④ 피보험자 가입연령 : 실손의료보험 개인실손전환(단체→개인) 특별약관에 따라 최대 65세 까지 가입 가능함.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⑤ 최대 재가입 연령 : 보험기간 종료후 재가입 특약에 따라 최대 69세까지 재가입 가능함

2)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②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2) 기타

- ①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Chubb. Insured.SM